

석유사업법 중심의 유사석유 근절책 마련 시급하다

글·김 신 | 석유가스신문 취재팀장

유사 석유의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사석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2심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인 세녹스나 LP파워는 물론이고 수십여가지의 아류첨가제들까지 가세해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30여종에 달하니 ‘대한민국은 유사석유 천국’이라는 주유소사업자들의 하소연이 엄살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말 석유품질검사소가 시중에서 첨가제라며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한 결과 그 종류만 무려 24가지에 달했다. 석유가스신문에서 추가로 확인한 제품이 5가지로 품점이나 석유가스신문 취재진에 노출된 첨가제만 그 종류가 최소 29가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대다수는 명백한 유사석유에 해당된다. 실체가 확인된 29가지의 제품이 실제로 첨가제와 관련해 검사를 거쳤는지 또 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환경부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에 확인해본 결과 이중 2/3 이상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8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첨가제의 최대 용기크기를 0.55리터로 제한하고 휘발유와의 혼합율을 1%미만으로 명시화한 이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세녹스와 LP파워도 첨가제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들은 여전히 첨가제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석유업계를 더욱 허탈하게 만드는 대목은 상당수의 가짜 석유가 그 제조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목이다. 석유품질검사소에 따르면 첨가제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다수가 용기에 제조사의 주소나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법을 무시하고 또 단속의 꼬투리도 남기지 않을 생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통시켜 온 악덕사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간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 샴의 법칙처럼 가짜휘발유가 진짜휘발유를 시장에서 내몰 수도 있다. 각종 세금에 치어 정품휘발유가 가짜휘발유에 비해 소비자가격이 훨씬 비싼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다간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삼의 법칙처럼
가짜휘발유가 진짜휘발유를 시장에서 내몰 수도 있다. 각종 세금에 치어 정품휘발유가
가짜휘발유에 비해 소비자가격이 훨씬 비싼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가짜휘발유가 진짜휘발유를 내몰 수도

음지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던 유사석유가 지금처럼 햇볕아래도 뛰쳐 나올 수 있었던데는 세녹스의 역할이 컸다.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을 앞세운 세녹스 제조사, 프리플라이트는 유사석유를 규정한 석유사업법의 법률적인 맹점을 파고 들어 무려 2년여가 넘는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세녹스가 유사석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석유사업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등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석유사업법에서 각종 석유제품과 유사석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허용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유사석유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행정력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었던 셈이다.

세녹스가 7백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여전히 제품생산에 나서고 있고 위험물주 유취급소 형태로 제품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는 이처럼 유사석유에 대한 명쾌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녹스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작업을 진행중인 국세청은 약 30억원대로 추정되는 생산공장을 압류했지만 공매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세녹스가 유사석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재판부의 판결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서 국세청의 공매작업에 대해 중지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비세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세녹스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외부 위탁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철저하게 현금거래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금융추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생산시설에 대한 압류와 공매는 물론 재산추적, 사업취소나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심지어 체납자의 출국금지나 여권발급도 제한할 수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녹스가 유사석유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는 이 모든 조치들이 무용지물이다.

신중 유사석유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석유사업법은 결국 세녹스논란의 핵심인 세금탈루에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부에서 조차 석유사업법의 한계를 꼬집고 있다. 김택기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유사석유, 연료첨가제 등에 대한 정의와 허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을 대폭 보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말 입법발의했다. 산업자원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보강책을 마련하고 법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법과 시행령에 나눠 규정하던 유사석유의 정의를 법에 일원화시킨 것은 석유사업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등의 헌법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보강하는 목적이 크다. 일단 석유사업법에 의해 유사석유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그 사업장의 폐쇄나 철거, 봉인 등의 조치를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대목도 정부의 대처능력을 민

침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타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의해 운영되는 유사석유 판매 점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가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석유 법적 근거 명확하게 규정돼야

아쉬운 점이라면 유사석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규제 개혁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석유관련단체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유사석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의 실수요자 증명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제의 생산업자나 판매업자는 석유사업자들로 거래상황기록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그 대책으로 용제에 휘발유세액에 상당하는 부과금을 매긴 이후 실소비자가 정상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환급해주는 소위 '용제부과금환급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규개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도한 규제이고 지나치게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산자부가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한 와중에도 프리플라이트가 세눅스를 외부 업체에 위탁생

산하고 있고 세무당국이 정확한 생산규모나 거래

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실소

비자 단계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유사석유에 의한 연간 세

금탈루액이 최소 5천여억원

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용제부과금환급

제의 도입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환경부가 대기환경

보전법령에 마련한 유

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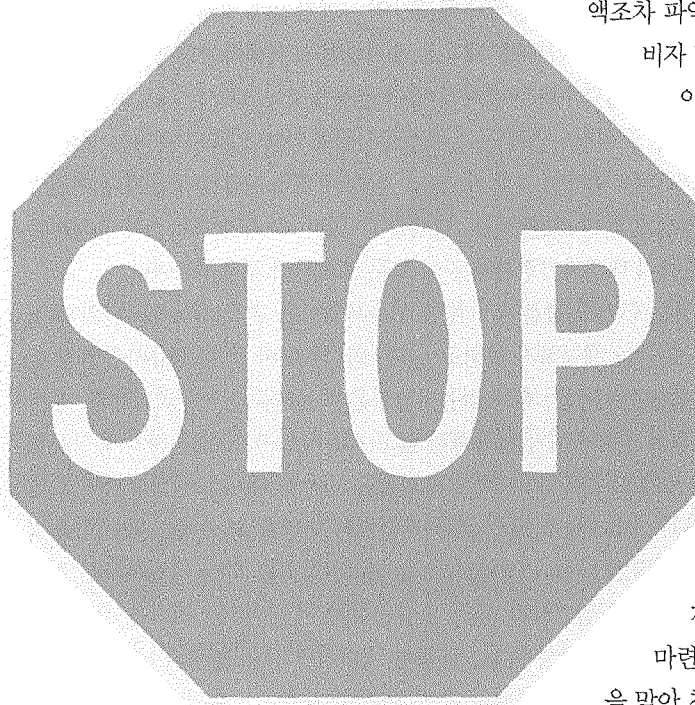
처벌 조항 역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다. 유사석유유통

을 막아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누수를



국가정책적인 목표가 같다면 즉 유사석유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타 행정부처 역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석유사업법의 개정과 맞물려 자신들의 소관법령을 손질하고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막을 수 있다는데 그깟 신고포상금을 아까워해서는 안된다. 수사행정력의 부재로 유사석유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면 석유관련단체가 최근 법무부에 건의한 것처럼 일선 행정단체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볼직 하다. 법무부가 지정하는 사법경찰권은 일선 행정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위임받아 직접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세관공무원이나 광산보안관 등 이미 34개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상시단속반을 구성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복제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만약 일선 지자체 에너지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면 최소한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영업행위들은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소방법이 석유사업법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위험물주유취급소형태의 사업장에서 세눅스나 LP파워가 판매될 수 있는데는 소방법에서 취급제품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위험물 취급소의 허가 요건만 갖추면 그 안에서 설령 가짜석유가 판매된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소방법상의 위험물취급소가 곧 석유사업법상의 주유소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물취급소에서 다룰 수 있는 제품은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정상적으로 석유제품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용제한금제 도입, 재검토 필요

유사석유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체험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다. 수 천억원의 세금이 탈루되면서 국가의 조세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정상 석유사업자들은 심각한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위험물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다뤄지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시민안전에 위협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유사석유를 규정하는 석유사업법이 대폭 손질돼 국회 통과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쟁(政爭)에 바쁜 국회에서 석유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던 듯 산자부는 국회상정일정을 17대 국회로 연기했다. 상황이 이쯤되면 오히려 국회가 나서 석유사업법의 개정작업을 재근하고 서두를 만드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산자부 혼자서만 유사석유와 싸우고 속태우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다. 국가정책적인 목표가 같다면 즉 유사석유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타 행정부처 역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석유사업법의 개정과 맞물려 자신들의 소관법령을 손질하고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석유사업법과 법제정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석유유통을 방치하고 제재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결국 정부 전체에 쏠릴 수밖에 없다. ♣